

낙동강 수계 공유지 보관 퇴비 강력 조치

- 공유지 보관 퇴비 수거 조치 및 미이행 시 고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여름 녹조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수계 공유지 퇴비 관리·수거 실적을 공개하고, 남아있는 공유지 야적 퇴비에 대해 미수거 시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 말까지 하천, 제방 등 낙동강 수계 공유지에는 640개의 야적 퇴비가 확인됐다. 이들 퇴비는 각 지자체별로 소유주 확인을 거치고 있으며, 약 41%인 265개는 수거 조치됐다.

환경부는 수거되지 않은 나머지 375개 퇴비에 대해 7월 10일까지 수거를 마치도록 지자체별로 조치명령을 내리는 한편, 소유주가 확인되지 않은 197개 퇴비도 신속한 소유주 파악을 통해 수거 조치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수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에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 소유주 확인이 곤란한 야적 퇴비는 지자체에서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일괄 수거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사유지에 보관 중인 야적 퇴비에 대해서 비가 내릴 때 녹조를 일으키는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퇴비 소유주와 축산농가에 퇴비 덮개 1,577개를 제공하고 강우 예보가 있으면 덮개 설치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정 보관을 위한 예방활동 및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붙임 지자체별 공유지 야적 퇴비 관리 현황. 끝.

담당 부서 <총괄>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책임자	과장	김양동 (044-201-7060)
		담당자	사무관	김상현 (044-201-7076)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	책임자	과장	김익수 (055-211-1780)
		담당자	주무관	김지은 (055-211-1781)
	대구지방환경청 수질관리과	책임자	과장	신상엽 (053-230-6510)
		담당자	주무관	이창용 (053-230-6511)

※ 낙동강 상류에서 하류까지 지자체 순서임

지자체	공유지 퇴비 야적 수	소유주		공유지 퇴비 조치	
		확인 (자체수거 포함)	미확인	수거완료	미수거
안동시	35	13	22	13	22
영주시	2	2		2	-
예천군	4	4	-	1	3
문경시	2	2	-	2	-
의성군	30	27	3	11	19
상주시	12	12	-	11	1
구미시	30	25	5	11	19
칠곡군	18	17	1	17	1
성주군	14	14	-	8	6
달성군	76	42	34	28	48
고령군	83	81	2	32	51
합천군	130	84	46	65	65
창녕군	83	49	34	30	53
의령군	31	19	12	2	29
함안군	15	14	1	7	8
진주시	1	1	-	1	-
창원시	20	14	6	1	19
밀양시	17	10	7	10	7
김해시	34	32	2	12	22
양산시	3	3	-	1	2
합 계	640	465	175	265	375